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63
----------	------

제출연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하여 용역 활용도를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결과 공개시점 변경(안 제11조제1항)

- 용역결과 1개월, 용역 평가결과 3개월, 용역 활용상황 6개월
→ 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나.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 제11조제2항)

- 비공개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제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13. ~ 9. 23.(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없이”를 “심의 없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의여부”를 “심의 여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용역기간동안”을 “용역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3호 중 “용역 결과”를 “용역결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연구윤리”를 “연구용역 윤리”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과 시 홈페이지, 시 행정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용역결과
2. 용역 평가결과
3. 용역 활용상황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을 “제11조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활용보고서”를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과 「○○○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변조·표절 등 타인의 지적 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

구 분	점검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반적 사항	①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내용을 알았다.		
	②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		
위조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가 있다.		
변조	②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가 있다.		
표절	③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있다.		
	④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⑥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중복 게재	⑦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있다.		
	⑧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있다.		
	⑨ 출처를 표시하였어도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		
부당한 저자 표시	⑩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⑪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였다.		

본인은 본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유사성 검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상기 항목들을 성실하게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프리즘(PRISM),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용역수행기관 책임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과제명		연구기간/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개월)		
활용구분	1.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2. []정책참고 3. []조사분석 4. []통계/DB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용역심의 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u>심의없이</u>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p> <p>1. ~ 4. (생략)</p>	<p>제6조(용역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심의 없이</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예산편성 등) ①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u>심의여부</u>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7조(예산편성 등) ①----- ----- <u>심의 여부</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u>용역기간동안</u> 1회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 ----- <u>용</u> <u>역기간 동안</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용역실명제)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용역과제 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2. (생략)</p> <p>3. <u>용역 결과</u>의 공개 및 활용</p> <p>4. (생략)</p>	<p>제9조의2(용역실명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용역결과</u> -----</p> <p>4. (현행과 같음)</p>

④ (생략)

제9조의3(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시 행정포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용역결과: 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2. 용역평가 결과: 평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3. 용역 활용상황: 평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

----- 연구용역 윤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시 행정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용역결과
- 2. 용역 평가결과
- 3. 용역 활용상황

<신 설>

제11조의2(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리) ①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생략)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리)

① ----- 제 11 조 를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하여 용역 활용도를 제고하고, 연구 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대 영